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17
------------	-----

2015년 6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2조의2 제6항과 제32조의3 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2조)

1) 주요 심의 사항

- 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 다)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1) 15명 이내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초과 금지
-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 위원 중 호선
- 3)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 초과 금지
- 4)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7조, 제8조)

○ 심의안건 배부 및 의견청취(안 제9조, 제10)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11조)

○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등(안 제12조~1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517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의 관리,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 등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¹⁾

나. 주요 검토의견

1)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크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제2조~제10조)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제11조~제20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그 구성과 임기에 관한 범위를 정해 놓았고²⁾, 동법 제37조의2

1)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2)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기의 3개의 위원회는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에 나타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위원회의 규정방식 등에 부합되게 구성되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한만큼, 안 제6조제3항의 서면심의를 행정편의적이고 형식적인 심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 2014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학교제외)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평균
지원사업수	24	23	25	24
지원단체수	1,840	1,067	704	1,204
지원금액	16,287	17,153	24,889	19,443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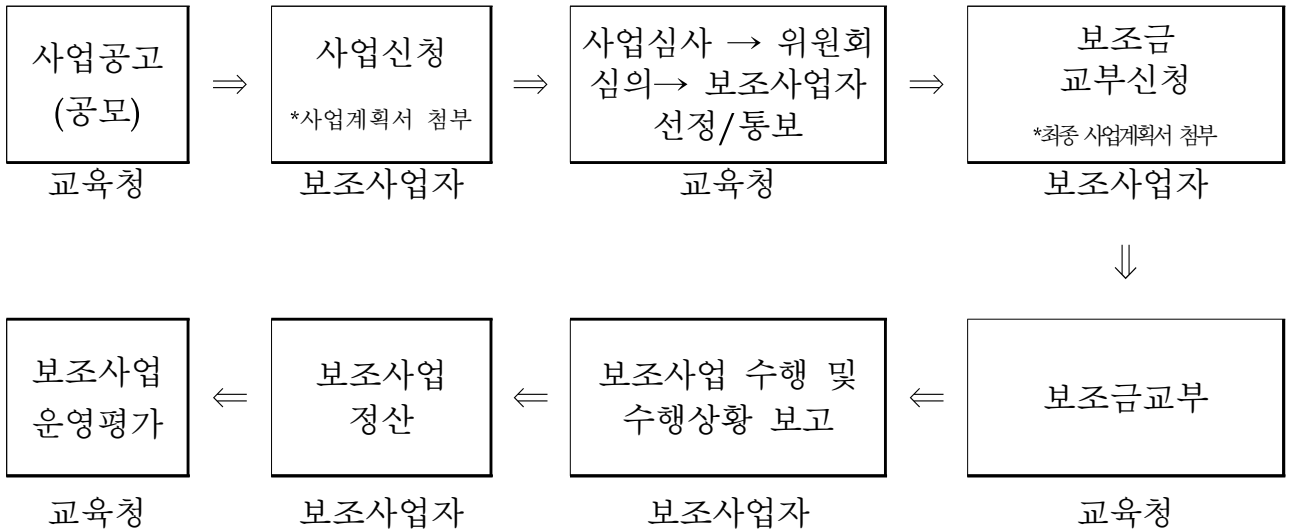
-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조례와 동일하여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 참고로 현행 조례 중 보조대상(제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제11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제12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제14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제15조), 보조금의 반환(제16조), 이의신청(제18조의2)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³⁾ 이번 조례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8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2호에서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는 사후 신고 사항이 아닌 사전 승인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⁴⁾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참고.

4)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집행, 정산, 성과평가 절차



2)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이는 크게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중 민간 보조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말하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조건, 교부결정 등 동 조례안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동 조례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8조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17
----------	-----------

제안년월일 : 2015년 06월 29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3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8조제2호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신청자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p> <p>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p> <p>3. 사업의 명칭, 신청자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p> <p>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p> <p>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p>	<p>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2. (원안과 같음)</p> <p>3. (원안과 같음)</p> <p>4.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학부모 등 가운데서 교육재정분야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6. 제7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신청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부담하는 자의 성명, 자부담 금액, 자부담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교부결정)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교육감은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시교육청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신청자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

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 1. 1.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5. 1. 1.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